

전문상표조사 보고서

의뢰인

정재형

의뢰일자

2025년 03월 20일

의뢰서비스

상표조사서비스

목 차

I. 조사대상

II. 종합의견

III. 상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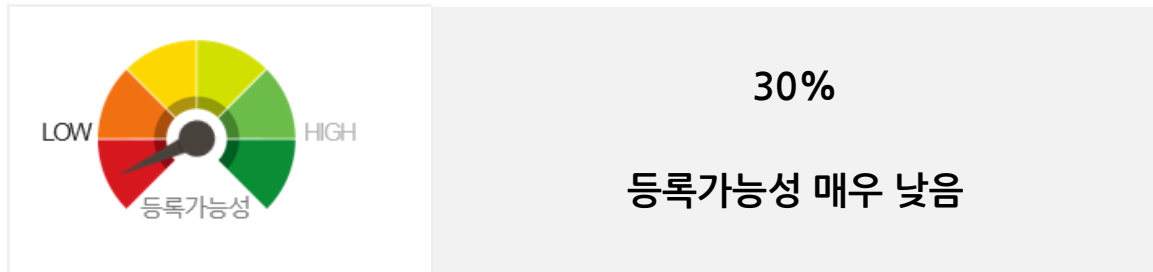
IV. 추천 상표등록 전략

I. 대상상표

상표명 / 이미지	
MEMORIUM JEONJU	
분류	지정상품
45류	장례서비스업,장례식장 경영업,장례식장업,애완동물 장례서비스업
	S128401+S128402

II. 종합의견

1. 종합결론



| 등록가능성에 따른 설명(참조용)

30%	등록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상표출원 권장하지 않아요. 네이밍을 변경하는게 어떤가요?
40~50%	등록가능성이 낮아요. 한번 도전해본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60~70%	등록가능성이 있어요. 상표출원 해볼만 합니다.
70~80%	등록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상표출원 권장해요.

2. 주요 심사항목 별 판단내용

특허청 주요 심사항목	변리사 판단내용
1. 상표로서 특징있는 주요부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 산지, 효능, 특징 등을 설명하는 단어로써 상표로 인식되기 어렵고, 독점을 부여하기 부적절한 단어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불허합니다. (제33조1항각호)	주요부가 없어요 😞
2.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안됩니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상표와 업종과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불허합니다. (제34조제1항제7호/제35조제1항)	유사한 상표가 없어요 😊
3. 먼저 상당히 알려진 유명상표와 유사하면 안됩니다. 유명인의 이름, 상당히 알려진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기에 불허합니다.	유명상표와 달라요 😊

III. 상세 조사결과

1. 상표로서 주요부가 있는지 여부

전문가 코멘트

‘JEONJU’는 ‘전주’로 인식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에 있는 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MEMORIUM’ 또한 ‘기념관’의 의미가 있어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전주에 위치한 기념관’으로 인식되며, 지정상품 관련 식별력이 없습니다.

2. 먼저 상표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전문가 코멘트

본원상표는 문자부 식별력이 미약한 바, 선행상표와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습니다.

네이밍을 새롭게 하거나 특별한 도형이나 로고를 결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행상표번호/ 상표명 / 출원인	유사도
1	 /등록 4020220001395김영민	비유사 ▾

2	 한국기독교기념관 Korea Christian Memorium /등록 4020190202646황학구	비유사 ▾
---	--	-------

3. 선사용 중인 유명상표의 존재

전문가 코멘트

본원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유명상표는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 혹시 선사용출처가 고객님의 출처인가요?

고객님의 출처가 맞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서는 출원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거절의견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재심사기간 및 전문의견대응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특허청 심사 신청 시에는 별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IV. 추천 상표등록 전략

네이밍을 새롭게 하거나 특별한 도형이나 로고를 결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심볼마크/식별력 단어 추가하여 상표출원

독특한 심볼마크나 단어가 추가되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고디자인이나 네이밍을 보완 후 상표출원을 의뢰해 주세요.

상표거절 ❌

상표등록 ✅

홍콩삼겹살 홍콩은 유명한 지명, 삼겹살은 메뉴명으로 상표로서 주요특징이 없어 독점이 어렵다.	 백종원 캐리커처가 부가되어 상표로서 특징이 있음. 단, 홍콩반점을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홍콩삼겹살	백종원홍콩반점 백종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상표로서 특징이 있음. 단, 홍콩반점을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고

주요부가 있는지(식별력 낮은 단어) 여부에 대한 의견은 심사관마다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도형 조사비용 안내

도형에 대해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 추가 조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 77,000원 (1분류당) / 단, 복합상표, 기타/모르겠음 으로 결제한 경우 제외)

마 크 인포

변리사 문경혜

변리사 구영희



면책규정

1. 본 조사는 2025년 03월 20일 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일 기준으로 45일 이내 출원된 상표와 6월 내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 일부 상표는 특허청 DB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 보고서는 상표전문 변리사님들의 오랜 경험과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그러나, 선행 조사 방법·범위에 의한 한계가 있고, 심사는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제3자의 정보제공/이의신청 등에 의해 거절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전에 사용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고객님의 스스로의 판단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될 경우의 환불 보증은 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3. 도형조사의 경우에는 특허청 DB에 도형코드가 확정되어야 검색이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도형코드가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유사한 도형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상술된 사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표불허사유 등이 존재하며, 사전조사가 어렵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식물품종명에 해당하는 경우
- 지리적명칭/품종명/농수산물 품질 오인 상표(34조제1항10호,14호,16호, 17호, 18호, 19호)
- 부정한목적 또는 부정경쟁 목적의 상표 (34조제1항13호)
- 국기/국장/공공기관의 명칭, 표장과 유사(34조제1항1호,2호,3호,5호)
- 공서양속을 해치는 상표/품질오인, 수요자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34조제1항4호,12호)